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등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17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0521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등 구분 작성 의무화 (안 제22조 등)	3
나.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안 제38조의5 등)	9

I.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0521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11. 4.

다. 회 부 일 : 2024. 11. 5.

2. 제안이유

건설노동시장은 임시·일용 근로자 중심의 고용체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하여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 현장 기피현상 및 건설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 불법 재하도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건설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2018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을 통해 시범사업 20건을 발주해 적정임금제의 임금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산재 감소 및 공사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함(안 제22조제7항·제8항).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8조의5제1항).
- 다. 공공 건설공사 및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5제4항).
- 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구분 작성 의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내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 명시 의무 또는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

4. 검토의견

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등 구분 작성 의무화 (안 제2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u>
⑦ <u>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u>	⑧ ----- ----- ----- ----- ----- ----- ----- ----- ----- ----- -----비용 및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 -----도급금액 산출

현행	개정안
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역서에-----, --- ----- ----- -보험료 또는 노무비 등----- ----- -----.
⑧ (생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개정안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의무적으로 구분·작성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정산할 수 있는 대상에 노무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임금 즉 노무비가 차지하는 규모 및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공사에서의 적정임금 수준을 보장¹⁾하고, 이를 통해

1) 참고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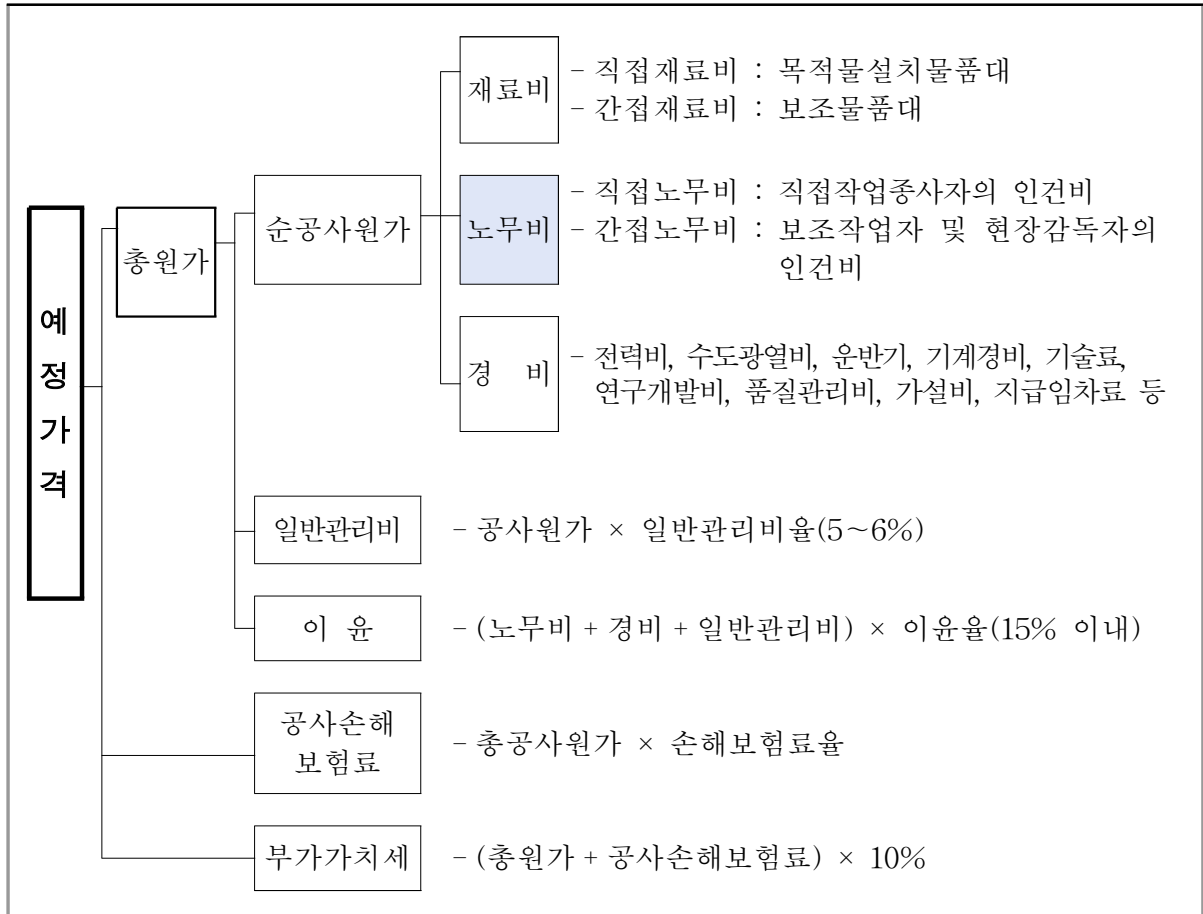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 [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

적정 공사비 산정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 공사비 구성항목 】



자료: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

현행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²⁾에서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

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면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적어야 하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외에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⁴⁾에 기재하는 내용에서는 도급금액 중 임금에

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금액 즉 노무비를 구분하여 적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금액에 적혀 있는 노무비를 노무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총액(노무비+재료비+경비 등) 범위 내에서 업체 기술력·인력·장비 동원의 효율성 등에 따라 구분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산정 및 그 적정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안 제38조의5를 연계·반영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노무비의 정산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노무비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안 제38조의5의 실효성 및 법체계성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임.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중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구분·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38조의5에 따른 적정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의 내용에 부합하는 세부기준(대통령령)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4) 참고자료 1 참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정산할 수 있는 대상에 노무비를 추가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실제 공사비 집행 관행이 재료비, 노무비, 제반경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집행되지 아니하고, 재료비, 노무비, 제반경비 등이 통합적으로 함께 지급·운영되고 있어,

모든 건설공사에서 사후 정산을 위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 노무비만을 조사·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노무비 정산과 관련한 관련 업계 및 발주청 등과의 사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노무비 정산은 도급금액에 적힌 노무비가 실제 집행 금액보다 많은 경우 건설사가 도급금액에 적힌 노무비를 전부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도급금액 내에서의 이윤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노무비 절감 및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도급금액에 적힌 노무비를 전부 청구할 수 없다면,

건설사는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한 노무비 절감의 유인책이 없어져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안 제38조의5 등)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8조의5(적정임금의 산정 및 지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이하 “적정임금”이라 한다)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

현행	개정안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 12. (생략)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	<u>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u> ⑤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임금 산정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81조(시정명령 등)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2조제7항·제8항</u>----- ----- -----<u>제38조제1항,</u> <u>제38조의5제4항</u>----- ----- ----- 5. ~ 12. (현행과 같음)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22조제7항·제8항</u>-----

현행	개정안
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 11. (생략) ②·③ (생략)	-----제38조제1항, 제38조의5제4항----- ----- 9.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이하 ‘적정임금’이라 한다)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에서의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시장은 임시·일용 근로자 중심의 고용체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가격경쟁이 주로 노무비 삭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열악한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건설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편, 공사비 절감을 위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불법 재하도급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설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른 ‘적정임금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임금의 하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최저임금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달리 건설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고시된 임금을 지급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최저임금제와 적정임금제 비교 >

구분	최저임금제	적정임금제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	건설업 근로자
적용 방식	하나의 최저한도를 적용	직종별로 적정임금 선정·고시
적용 목적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	근로자의 생산성 등에 따른 적절한 임금 지급

적정임금제는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그 도입의 필요성이 발표된 바 있음.

동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급사 → 하도급사 → 현장관리자⁵⁾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 구조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⁶⁾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지급될 수 있는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산업영향, 국가재정⁷⁾ 등을 감안하여 시범사

5) 건설현장에서는 주로 십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나 잡부들을 직접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람을 말함. 십장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직영 일꾼들을 통솔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소상품생산자로 존재하는 독립 십장이 하청(도급)의 고리를 통하여 고용되는 경우임

6) 노무비 쥐어짜기를 통한 저가수주, 십반장의 중간착취* 등에 따른 임금수준 하락은 내국인의 건설업 취업기회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

* [사례] 이○○는 박△△ 팀장의 소개로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의 하도급업체 □□와 일당 12만원에 근무하기로 했으나, 팀장은 실제 □□로부터 14만원을 받고 2만원을 가로챈 뒤 이○○에게 12만원만을 지급, 이를 항의하자 박△△팀장은 이○○를 8일 만에 해고

7) 공공공사(연간 40조원 내외)에 전면시행시 연간 2조원의 공사비 증가 예상

업을 우선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정임금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하였음⁸⁾.

이에 따라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건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은 5 ~ 15% 상승하였고, 내국인력 채용도 94.5%로 타 현장 수준(70%, 철도공단)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⁹⁾,

공사비 절감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과 이로 인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근로자의 채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적정임금제의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임.

한편, 개정안에서는 적정임금의 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재정으로 발주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적정임금 산정 협의 대상에 국가재정관리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도 포함시킬 필요가

8) ○ (사업대상) 발주물량이 많고 사업관리 경험이 풍부한 LH, 도공, 철도공단, 수공 소관 10개 내의 현장을 매년 선정, 2년간 실시

* ('18) 대형업체가 참여하는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 현장 10개소

('19)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적격심사낙찰제(300억원 미만) 현장 10개소 내외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p29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820호, 2021년 2월 1일)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서는 적정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최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원자재값이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 건설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으로 건설사 및 국민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 전 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를 고려해 볼 때, 개정안에 따른 적정임금제의 도입은 노·사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에서는 ①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타 부분의 비용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 또다른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공사비’ 보장제도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고, ②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2024년 기준 타 산업 대비 오히려 높은 수준¹⁰⁾으

10) <산업별 상용/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 및 임금 비교>

산업 분류	근로시간(시간)		월평균임금(원)		150시간 환산 월평균임금(원)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전체	154.9	83.7	4,108,207	1,758,094	3,978,251	3,150,706
제조업	164.9	97.9	4,454,272	2,065,647	4,051,794	3,164,934
건설업	155.3	88.7	4,295,555	2,451,262	4,148,958	4,145,313

※ 출처 :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24.6월 기준)

로 적정임금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려워 현재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공정·숙련도별로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우선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③ 임금 상승의 효과가 있는 적정임금제 도입은 상대적으로 경영자금이 열악한 중소건설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생산성이 높은 숙련된 근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 신규근로자의 진입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점, ④ 미국의 경우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약 10 ~ 40%의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해 볼 때¹¹⁾, 대책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① 건설업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대다수 산업에서 적정임금제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 상승을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② 근로자 임금은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을 통하여 기업과 근로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자유를 제약하고 건설공사에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점, ③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노무비가

11) <미국 PW적용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현황>

연구자	공사비 증가	비고	연구시기
Fraundorf, Farrell & Mason	26.1%	공공 vs 민간 공사비 비교	1984
Richard Vedder	16%	학교 리모델링	1999
Dunn, Quigley & Rosenthal	9~37%(23%)	공공 주택	2005
Paul Kersey	12.5%	39%(임금)를 공사비로 환산 $39\% \times 31\% = 12.5\%$	2007
Glassman 등	9.9%		2008

※ 출처 : Prevailing Wage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소고(20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70%이상 차지하고 있어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증가된 공사비용이 국가 예산(세금) 및 분양가 증가로 이어져 결국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안 제81조 및 제82조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정임금 이상의 노무비를 구분하여 적지 않거나 건설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또는 대체 과징금 부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적정임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91

<참고자료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¹⁾)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7. 선 금 : 일금 원정(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 ()월에 1회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0.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 : % *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 11.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원정	
		() % 원정	
		() % 원정	
12. 지체상금을 : 13.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4. 물가변동 적용기준 : 품목조정률 ☐ , 지수조정률 ☐ 15. 기타사항 :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불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도 급 인 주소 성명 (인) 수 급 인 주소 성명 (인)			